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93. 5. 17.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3. 4. 26.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93. 4. 30

다. 상정일자: 제16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3. 5.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김석봉)

가. 제출이유

정년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91. 5. 31. 제4370호)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주요골자는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유남렬 위원): 본 조례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년퇴직일전 3개월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특별휴가는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가?

○답변(총무과장 김석봉): 퇴직예정자를 대상

으로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대상자가 신청을 하여 90%이상 실시되고 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시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1993년 4월 26일

제 출 자: 마 포 구 청 장

1. 개정이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1991. 5. 31. 제4370호)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함.  
(안 제24조 제6항)

3. 개정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66조의2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4. 신·구조문대비표

“별 첨”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

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 (특별휴가) ①-⑤(생략)</p> <p>⑥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4조 (특별휴가) ①-⑤(현행과 같음)</p> <p>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93. 5. 1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3. 4. 30.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93. 5. 6.

다. 상정일자: 제16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3. 5.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가. 제출이유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 구청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
- 운영비보조: 구청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보조

○직원임용: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

○지도·감독체계: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을 지도·감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른 행정작용의 다양화 전문화로 인하여 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양적으로 팽창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고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동 조례안은 특정 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한 관련 규정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수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 발달 및 행정체계 등 적절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